

조선 후기 閣臣教旨와 春坊教旨의 시행과 제도

노인 환*

-
- | | |
|-----------------|-----------|
| 1. 머리말 | 4. 발급과 수취 |
| 2. 시행 과정 | 5. 맺음말 |
| 3. 傳存 현황과 문서 양식 | |
-

초록: 조선 후기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정조와 고종 연간에 시행된 규장각과 세자시강원 관원의 임명문서이다. 정조는 규장각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宋의 제도를 참고하여 각신교지를 시행하였다. 이후 고종은 세자시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조가 시행한 각신교지를 참고하여 춘방교지를 시행하였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시행된 기간이 짧고 수취하는 관원도 제한적이며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처음 임명될 때에 발급되었기 때문에 현전하는 문서가 매우 적었다. 문서 양식은 국왕의 임명문서인 告身과 명령문서인 敎書를 함께 반영하였다. 문서의 1행에 '敎旨'를 기재하고 2행에 '王若曰'로 시작하였다. 본문은 규장각·세자시강원 관직과 업무의 중요성, 임명한 이유, 국왕이 당부하는 내용 등을 駢麗文으로 제출하여 수록하였다. 본문의 끝부분은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관직을 '以某階某職某爲某階某職者'로 끝맺고 있다. 본문의 다음 행에는 淸의 연호와 월일로 발급일자를 기재하였다. 각신교지는 濬哲之寶를, 춘방교지는 濬明之寶를 각각 安寶하였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발급은 製述과 正書·安寶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왕의 결재를 2차례 받았다. 춘방교지의 경우에는 제출된 敎旨草件을 왕세자가 먼저 결재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수취는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관원이 국왕에게 謝恩肅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국왕이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원을 우대하기 위해 시행된 문서 제도로 볼 수 있다.

핵심어 : 閣臣教旨, 春坊教旨, 奎章閣, 世子侍講院, 閣臣, 春坊, 濬哲之寶, 濬明之寶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1. 머리말

조선시대 규장각은 선대 국왕의 御製·御筆·璿譜·世譜·誥命과 재위 중인 국왕의 어진·어제·어필을 봉안하고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¹⁾ 세자시강원은 세자에게 經書와 史書를 강론하고 도덕과 의리로 바로잡고 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²⁾ 국왕은 규장각과 세자시강원 관원에게 성종 연간에 반포된 『經國大典』 告身式을 준용한 임명문서를 내려주었다. 규장각과 세자시강원 관원의 임명문서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라 첫 행에 ‘教旨’를 기재하고 본문에 ‘某爲某階某職者’를 기재하며 ‘施命之寶’를 安寶하였다.

그러나 정조 연간의 규장각 관원과 고종 연간의 세자시강원 관원에게 『경국대전』 고신식과 다른 새로운 양식의 문서 제도를 시행하였다. 기존의 고신에 교서의 양식을 결합하여 규장각의 ‘閣臣教旨’와 세자시강원의 ‘春坊教旨’라는 새로운 문서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에 대해 시행 과정, 傳存 현황과 문서 양식, 발급과 수취 과정 등의 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선행 연구는 규장각의 문서 제도 연구, 閣僚 선발 연구, 각신교지·춘방교지와 敎書의 문서 양식을 비교한 연구, 춘방교지에 안보된 瀋明之寶 연구 등이 있다. 규장각의 문서 제도 연구는 규장각의 직제와 기능, 문서별 규정과 인장 제도를 중심으로 각신교지의 양식, 시행 과정, 문서 제도 등을 연구하였다.³⁾ 閣僚 선발 연구는 정조 연간에 御製統治文書를 연구하는 가운데 규장각 각신의 선발 사례와 각신에 내린 각신교지를 살펴보았다.⁴⁾ 문서 양식의 비교 연구는 金熹의 각신교지, 金商惠의 춘방교지와 金堉의 使命訓諭敎書에 대해 始面·起頭語·結辭·본문·발급일자·寶印을 비교하였다.⁵⁾ 준명지보 연구는 2014년에

1)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奎章閣. “《增》 掌奉列朝御製·御筆·璿譜·世譜·顧命·當宁御眞御製御筆.”

2)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世子侍講院. “《原》 掌侍講經史, 規諷道義.”

3) 김건우, 2012 「규장각의 문서제도와 그 위상」, 『嶺南學』 21, 영남문화연구원, 183-186면.

4) 문보미, 2017 「正祖의 御製統治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0-106면.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의 인장 9점 중에서 준명지보의 제작 배경과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였다.⁶⁾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각신교지와 춘방교지가 정조 연간과 고종 연간에 시행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서 양식을 구현하고자 한다. 끝으로 『大典會通』·『六典條例』 등의 법전, 『奎章閣志』·『侍講院志』·『銀臺便攷』 등의 官署志, 『內閣日曆』·『春坊日記』 등의 일기 자료를 통해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발급과 수취 과정 등 관련 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각신교지와 춘방교지가 갖는 제도적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시행 과정

조선 후기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정조 연간과 고종 연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각신교지는 1781년(정조 5) 2월 11일에 정조가 좌승지 徐有防에게 내린 備忘記에서 규장각 관원의 임명문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⁷⁾

또 비망기를 통해 서유방에게 傳敎하기를, “규장각의 임무는 가볍지 않고 중요하다. 더구나 모든 일에 龍圖閣의 故事를 본받았는데 용도각 學士에게 있던 것을 규장각 提學에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제학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에게 규장각에서 敎書를 撰述하고 규장각에 있는 奎章之寶를 安寶하여 전해주며 直提學 이하에게 교서를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규장각에서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⁸⁾

5) 노인환, 2014 『朝鮮時代 敎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6-211면.

6) 성인근, 2014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문화재』 66, 국립문화재연구소, 202-203면.

7) 閣臣敎旨의 시행과정은 김건우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內閣日曆』에서 수록된 각신교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김건우, 2012 앞의 논문, 183-185면.)

8) 『承政院日記』 1480책, 정조 5년(1781) 2월 11일(갑인). “又以備忘記傳于徐有防曰, 內閣之

비망기에서 정조는 규장각 제학으로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교서를 찬술하고 규장지보를 안보하여 전해주며 직제학 이하에게 교서를 선포하는 것의 當否를 규장각에서 상고한 후에 아뢰라고 하였다. 다음 날 2월 12일에 서유방은 규장각 草記를 통해 상고한 내용을 入啓하였다.⁹⁾ 초기의 내용은 규장각에서 歐陽修의 『六一集』, 呂祖謙의 『宋文鑑』, 王安石의 『臨川集』 등 宋의 문헌을 상고하니 용도각 관원에게 내린 制와 誥를 확인하였다는 것이었다.¹⁰⁾ 또한 규장각에서는 송의 제도에서 모든 관직에 制書를 선포하여 告身으로 삼기 때문에 直學士 이하의 관원에게 모두 制詞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제도는 致仕한 관원 및 공신 이외에 교서가 없다는 것을 아뢰었다.¹¹⁾

같은 날 규장각 초기에 대해 정조는 각신교지의 시행에 대한 전교를 내렸다. 전교의 내용은 규장각의 提學·直提學·直閣·待教로 임명된 관원에게 규장각에서 교지를 찬술하고 규장지보를 안보해서 내려주라는 것이었다. 또한 宣敎하는 글을 ‘敎旨’라고 칭하고, 교지의 篇作과 句數는 간결하고 번잡하지 않게 하며, 外廷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규장각에서 찬술하게 하라는 내용이었다.¹²⁾ 이러한 각신교지는 정조가 규장각 閣臣을 특별히 대우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문서 제도로 볼 수 있다.

任, 不輕而重. 況每事就做龍圖故事, 所有於閣學士者, 可不爲於閣提學乎. 從今提學新拜之人, 自本閣撰敎書, 安本閣所在奎章之寶以傳, 直提學以下宣敎書當否, 令本閣博考以聞.”

- 9) 『內閣日曆』 정조 5년(1781) 2월 12일(을묘). “以草記呈于政院曰, 本閣直提學以下宣敎書當否, 令本閣博考以聞事, 命下矣. 取考宋朝文獻. …”
- 10) 龍圖閣은 宋 眞宗 때 설치한 아문으로 太宗의 御書·御製·文集과 典籍·圖書·世譜 등을 봉안하였고, 學士·直學士·待制·直閣·學士 등의 관직이 있었다. 『文獻通考』 卷54 職官考8. “龍圖閣. [學士·直學士·待制.] 宋朝大中祥符中, 建龍圖閣, 在會慶殿西偏, 北連禁中閣, 東曰資政殿, 西曰述古殿, 閣上以奉太宗御書·御製·文集及典籍·圖書·寶瑞之物, 及宗正寺所進屬籍世譜. 有學士·直學士·待制·直閣·學士.”
- 11) 『承政院日記』 1480책, 정조 5년(1781) 2월 12일(을묘).
- 12) 『正祖實錄』 11권, 정조 5년(1781) 2월 13일(병진). “敎曰, 內閣每事取做龍圖閣, 所有於閣學士者, 可不爲於閣提學乎. 從今提學, 至待教新拜之人, 自本閣撰敎書, 安奎章之寶以傳. 敎書與敎旨差間, 敎書卽宋詔體也, 敎旨卽宋告身也. 今以宣敎之文, 稱以敎旨, 則可謂做古酌今, 有據無礙. 至於篇作句數, 宜簡不宜煩. 此不必煩於外廷, 只是自內閣撰出, 宣於內閣之臣. 卿等照此.”

이후 2월 26일에 정조는 규장각 司卷을 통해 鄭東浚에게 다음과 같은 전교를 내려 각신교지의 발급 대상, 결재 방식, 체제 및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하였다.

司卷을 통해 鄭東浚에게 전교하기를, “각신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에게 교지를 찬술하여 선포하는 것은 이미 定式이 있었다. 원임은 비록 하나하나 쫓아서 찬술할 수 없더라도 시임의 여러 관원은 모두 마땅히 처음에 새로 임명한 것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오늘 안에 찬술하여 줄 교지는 찬술하여 올린 사람이 入啓하여 낙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규장각에서 분배하여 시행하라. 교지의 체제는 교서와 크게 달라서 한결같이 전교의 체제를 따르는데 句를 짓는 것은 駢儷文을 사용한다. 후 글을 지어 찬술하여 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四六文의 많고 적음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오직 참작하는 데 있다. ‘惟卿’과 ‘惟爾’의 경우에는 句를 나란히 하지 말고 다만 이 官에 임명되고 이 職에 제수된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체로 문장은 兩漢의 詞命을 숭상하고 뜻은 唐宋의 고신을 취한 후에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에 맞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였다.¹³⁾

정조는 전교에서 각신교지의 발급 대상을 시임 각신으로 한정하였다. 각신교지의 결재 방식은 이번 2월 26일에 찬술하는 각신교지의 경우는 찬술하여 올린 사람이 入啓하여 낙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교지의 체제는 전교의 체제를 따르는데 句는 駢儷文을 사용하고 四六文의 많고 적은 것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惟卿’과 ‘惟爾’의 경우에는 句를 나란히 하지 말고 관직에 임명된 내용을 수록하며, 문장은 兩漢의 詞命을 숭상하고 뜻은 唐宋의 고신을 취한 후에 옛날과 지금을 참작하라고 하였다. 같은 날 정조의 전교에 따라 규장각에서 제학 金鍾秀·俞彥鎬, 직제학 鄭民始·沈念祖, 직각 徐鼎修, 대교 鄭東浚·徐龍輔의 각신교지를 발급하였다.¹⁴⁾

13) 『內閣日曆』 정조 5년(1781) 2월 26일(기사). “以司卷傳于鄭東浚曰, 閣臣新拜人, 撰宣教旨, 已有定式. 原任雖不可一一追撰, 時任諸僚, 皆當令初無異新拜. 今日內撰給教旨, 撰進人不必入啓受點, 自本閣分排爲之. 教旨之體, 與教書大異, 一倣傳教體段, 而句作則用駢儷. 或欲以行文撰進者, 亦不必拘束於四六文之多少, 惟在參酌矣. 至於惟卿惟爾, 句竝勿爲, 但道命是官·授是職之意爲好. 大抵文尙兩漢詞命, 意取唐宋告身然後, 可合酌古宜今之道矣.”

14) 『內閣日曆』 정조 5년(1781) 2월 26일(기사).

각신교지에 안보된 어보는 1781년(정조 5) 2월 12일 정조의 진교에서 규장지보를 안보하라고 하였으나 2월 27일에 대교 鄭東浚이 각신교지에 어보를 안보할 때에는 同文之寶를 내줄 것을 청하였다.¹⁵⁾ 그러나 6월 11일에 직제학 沈念祖는 직제학 鄭志儉의 각신교지에 어보를 안보하기 위해 濬哲之寶를 내줄 것을 청하였다.¹⁶⁾ 1784년(정조 8) 편찬된 『奎章閣志』에는 새로 임명된 각신에게 규장각에서 각신교지를 찬술하여 宣敎하는 규정이 수록되었다.¹⁷⁾ 최종적으로 1785년(정조 9) 반포된 『大典通編』에는 각신교지에 준철지보를 안보하는 것이 법제화되었다.¹⁸⁾

각신교지는 1894년(고종 31) 6월에 새로 임명된 직제학 李耕植에게 마지막으로 발급되었다.¹⁹⁾ 같은 해 7월에 규장각은 宮內府의 소속 아문이 되었고,²⁰⁾ 규장각의 직제도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이 폐지되고 學士·直學士·直殿·待制·祕書主事·圖書主事·寫字主事·閣監主事 등이 신설되었다.²¹⁾ 규장각이 궁내부에 소속되고 직제가 변화함에 따라 각신교지는 폐지되었다. 또한 갑오개혁으로 임명문서 제도가 고신에서 官誥로 변경됨에 따라 규장각 관원에게도 관고 양식의 새로운 임명문서가 발급되었다.²²⁾

15) 『內閣日曆』 정조 5년(1781) 2월 27일(경오). “鄭東浚以領籤口傳啓曰, 閣臣敎旨, 今當安寶, 請出同文之寶.”

16) 『內閣日曆』 정조 5년(1781) 6월 11일(임오). “沈念祖以領籤啓曰, 直提學鄭志儉敎旨安寶次, 濬哲之寶請出.”

17) 『奎章閣志』 院規第七 宣敎. “凡閣臣除拜, 依宋朝龍圖閣故事, 自閣中撰麻宣敎.”

18) 『大典通編』 禮典 璽寶. “《增》… 濬哲之寶. [用於閣臣敎旨.] ”

19) 『承政院日記』 3047책 고종 31년(1894) 6월 1일(병오). “又以奎章閣言啓曰, 新除授直提學李耕植, 敎旨安寶次, 濬哲之寶請出之意, 敢啓. 傳曰, 允.”

20) 『高宗實錄』 32권, 고종 31년(1894) 7월 18일(임진). “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 宮內府, 政院 [尙瑞院], 經筵廳 [承文院·藝文館·弘文館·春秋館], 奎章閣 [校書館·寫字廳·圖書署], …”

21) 『高宗實錄』 32권, 고종 31년(1894) 7월 22일(병신). “一, 奎章閣敬奉御眞, 掌謨訓圖書. [校書·圖書·寫字] 學士一員, 直學士一員, 直殿一員, 待制一員, 祕書主事二員, 圖書主事二員, 寫字主事·閣監主事各二員.”

22) 김건우, 2008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118-132면.

<p>1779년(정조 3) 奎章閣待教 金勉柱 告身²³⁾</p>	<p>1788년(정조 12) 奎章閣直提學 金憲 閣臣教旨²⁴⁾</p>	<p>1907년(광무 11) 奎章閣學士 尹用求 官詔²⁵⁾</p>

〈그림 1〉 규장각 임명문서의 변화

각신교지가 시행되고 약 100여 년 후인 1889년(고종 26)에 고종은 세자시강원 관원에게 春坊教旨를 내려주었다. 춘방교지는 각신교지와 문서 양식이 매우 유사하였는데, 춘방교지를 시행할 때에 각신교지의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춘방교지의 시행과 관련하여 7월 18일에 고종은 우승지 閱致憲에게 다음과 같은 전교를 내렸다.

민치현에게 전교하기를, “춘방의 직분은 본래 청렴한 준결이니 우대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輔德 이하 시임 및 새로 임명된 사람에게 본원에서 교서를 찬술해 내어 특별히 반포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²⁶⁾

고종은 전교를 통해 세자시강원의 관원을 우대하기 위해 보덕 이하의 현직 관원과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특별히 교서를 반포하는 규정을 정식으로 정하였다. 고종의 전교에 따라 춘방교지는 시행 초기에 ‘教書’ 또는 ‘春坊教書’로 불리었다. 7월 29일에 세자시강원에서는 보덕 이하 10명의 教書草件을 세자에게 入達한 후에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古文書集成』 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276면.

24) 서울대학교도서관, 1986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331면.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디지털 장서각(<http://jsg.aks.ac.kr/>).

26) 『承政院日記』 2987책, 고종 26년(1889) 7월 18일(임술). “傳于閱致憲曰, 春坊之職, 本自清雋, 宜示優待之意. 輔德以下時任及新拜人, 自本院撰出教書, 特爲頒宣事, 自今著式.”

고종에게 入啓하였다.²⁷⁾ 고종은 8월 5일에 司謁을 통해 口傳下敎를 내려 本營과 호조에 濬明之寶의 제작을 명하였고,²⁸⁾ 10월 7일에 준명지보를 춘방교서에 안보하는 규정을 정식으로 정하였다.²⁹⁾ 이후 10월 10일에 새로 임명된 세자시강원 관원에게 처음으로 춘방교서를 발급하였다.³⁰⁾

1890년(고종 27)에 춘방교서는 춘방교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월 12일에 새로 임명된 輔德 閔泳達, 弼善 鄭世源, 兼司書 尹昌燮에게 춘방교서를 발급하였으나 윤 2월 28일에 文學 金弼洙에게는 춘방교지를 발급하였다.³¹⁾ 이후 1891년(고종 28) 세자시강원의 故事·傳敎·儀禮 등을 수록한 『離院條例』에는 춘방교지의 수취 대상, 撰述, 敎旨式, 준명지보의 안보 등 춘방교지 관련 규정을 수록하였다.

춘방교지는 1894년(고종 31) 7월 14일에 새로 임명된 세자시강원 輔德 李竣鎔에게 마지막으로 발급되었다.³²⁾ 같은 해 7월 18일에 세자시강원은 규장각과 마찬가지로 궁내부의 소속 아문이 되었다.³³⁾ 세자시강원이 궁내부에 소속됨에 따라 춘방교지는 폐지되었고 갑오개혁 이후에 세자시강원 관원에게 官誥 등의 임명문서가 발급되었다.

춘방교지의 시행은 정조 연간에 각신교지의 시행을 통해 규장각의 권한과 기능

27) 『春坊日記』 18, 기축(1889) 7월 29일(계유), “輔德以下十員敎書草件入達. [先達後啓.]”

28) 『承政院日記』 2988책, 고종 26년(1889) 8월 5일(무인), “以司謁口傳下敎曰, 大朝鮮國寶·濬明之寶·同文之寶·欽文之寶·命德之寶·廣運之寶, 造成之節, 令本營戶曹舉行.”

29) 『春坊日記』 16, 기축(1889) 10월 7일(기묘), “上命春坊敎書, 濬明之寶安寶以傳. 上敎曰, 春坊敎書, 以濬明之寶請出安寶以傳事, 定式.” ; 『高宗實錄』 26권, 고종 26년(1889) 10월 7일(기묘), “命春坊敎書, 以濬明之寶請出安寶事, 定式.”

30) 『春坊日記』 17, 기축(1889) 10월 10일(기축), “本院達曰, 敎書安寶次, 濬明之寶請出之意, 敢達. 答曰, 知道. ○敎書安寶後還, 入達. [典書官舉行.]”

31) 『承政院日記』 2993책, 고종 27년(1890) 2월 12일(임오), “又以侍講院言啓曰, 新除授輔德閔泳達, 弼善鄭世源, 兼司書尹昌燮敎書安寶次, 濬明之寶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 『承政院日記』 2991책, 고종 27년(1890) 윤2월 28일(무진), “又以侍講院言啓曰, 新除授文學金弼洙, 敎旨安寶次, 濬明之寶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32) 『承政院日記』 3048책, 고종 31년(1894) 7월 14일(무자), “又以侍講院言啓曰, 新除授行輔德李竣鎔, 敎旨安寶次, 濬明之寶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33) 『高宗實錄』 32권, 고종 31년(1894) 7월 18일(임진), “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 宮內府, …侍講院 [翊衛司·講書院·衛從司]…”

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 고종은 규장각의 각신교지·閣臣牙牌·內府書籍牌 등의 제도를 본받아 춘방교지·春坊牙牌·내부서적패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³⁴⁾ 또한 정조 연간에 편찬된 『侍講院志』가 있었으나 별도로 『離院條例』를 편찬하여 세자시강원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고종 연간에 임명문서의 변화, 각종 제도의 시행, 관서지의 편찬을 통해 세자시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시행은 규장각과 세자시강원 관원에 대한 임명문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임명문서에 단순히 임명된 관직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駢儷文으로 국왕의 명령을 추가하였다. 또한 임명문서에 안보하는 어보를 새롭게 제작하여 기존에 施命之寶가 아닌 濬哲之寶와 濬明之寶라는 독자적인 어보를 안보하였다. 이러한 문서 양식의 변화와 독자적인 어보의 안보를 통해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원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3. 傳存 현황과 문서 양식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조선시대 임명문서인 고신보다 짧은 기간 동안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전하는 문서도 매우 적게 남아있다. 1781년(정조 5)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시행된 각신교지는 총 5점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5점의 각신교지는 규장각의 직제학·직각·대교에 임명된 金憲·金正喜·朴鳳彬·兪鎮弼·金商惠에게 발급된 문서이다. 1889년(고종 26)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약 5년 동안 시행된 춘방교지는 총 2점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2점의 춘방교지는 1890년(고종 27) 세자시강원 兼司書 兪鎮弼과 1892년(고종 29) 弼善 金商惠에게 발급된 문서이다.

34) 『寶印符信總數』牙牌前後圖.

〈표 1〉 閣臣教旨와 春坊教旨 傳存 현황

문서명	번호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규격(cm)	출처
閣臣教旨	1	1788년 (정조 12) 12월 28일	正祖	金憲	金憲를 奎章閣直提學·春秋館修撰官·知製教에 임명하는 閣臣教旨	116×170	서울대학교도서관, 1986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331면
	2	1823년 (순조 23) 8월	純祖	金正喜	金正喜를 弘文館正字·知製教·兼經筵典經·春秋館記事官·奎章閣待教·校書館正字에 임명하는 閣臣教旨	152×428	개인 소장
	3	1871년 (고종 8) 8월	高宗	朴鳳彬	朴鳳彬을 奎章閣直閣·春秋館記注官·校書館校理·知製教에 임명하는 閣臣教旨	115.6×301.2	천안박물관, 2012 『高靈朴氏 進士公派 寄贈遺物』 I, 185면
	4	1886년 (고종 23) 12월	高宗	俞鎮弼	俞鎮弼을 通訓大夫·奎章閣直閣·兼春秋館編修官·校書館校理·知製教에 임명하는 閣臣教旨	109×281.2	국립고궁박물관 所藏
	5	1890년 (고종 27) 11월	高宗	金商憲	金商憲을 通訓大夫·行奎章閣直閣·兼春秋館編修官·校書館校理·知製教에 임명하는 閣臣教旨	111.5×17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古文書集成』 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286면
春坊教旨	1	1890년 (고종 27) 11월	高宗	俞鎮弼	俞鎮弼을 侍講院兼司書·知製教에 임명하는 春坊教旨	111×215.9	국립고궁박물관, 2017 『다시 찾은 조선 왕실의 어보』, 54면
	2	1892년 (고종 29) 5월	高宗	金商憲	金商憲을 通訓大夫·侍講院弼善·知製教에 임명하는 春坊教旨	109.3×156.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古文書集成』 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287면

현전하는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수량이 적은 이유는 시행 기간뿐만 아니라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를 발급하는 관직과 관련이 있다. 각신교지의 발급 대상은 종1품~종2품의 提學 2명, 종2품~정3품의 直提學 2명, 정3품~종6품의 直閣 1명, 정7품~정9품의 待教 1명으로 총 6명이었다.³⁵⁾ 춘방교지의 발급 대상은 정3품 輔德·

兼輔德 각 1명, 정4품 進善·弼善·兼弼善 각 1명, 정5품 文學·兼文學 각 1명, 정6품 司書·兼司書 각 1명, 정7품 說書·兼說書 각 1명으로 총 11명이었다.³⁶⁾ 발급 대상이 고신과 비교하여 한정되었기 때문에 현전하는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수량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2〉 閣臣教旨와 春坊教旨의 발급 관원

관직	提學	直提學	直閣	待教	합계
품계	중1품~중2품	중2품~정3품	정3품~중6품	정7품~정9품	
인원	2	2	1	1	6

관직	輔德	兼輔德	進善	弼善	兼弼善	文學	兼文學	司書	兼司書	說書	兼說書	합계
품계	정3품	정3품	정4품	정4품	정4품	정5품	정5품	정6품	정6품	정7품	정7품	
인원	1	1	1	1	1	1	1	1	1	1	1	11

각신교지와 춘방교지가 발급되는 시점도 현전하는 문서의 수량과 관련이 있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관직에 처음 임명될 때 발급되었다. 이후 해당 관원이 다른 아문으로 옮긴 후에 다시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 임명되거나 겸직될 경우에는 고신을 내려주었다. 즉 국왕이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최초로 임명된 관원에게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발급되는 수량은 고신보다 적었다.

예를 들어 김희는 1788년(정조 12) 12월에 규장각 직제학으로 처음 임명되어

35)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奎章閣. “提學二員 [從二品至從一品.], 直提學二員 [正三品堂上至從二品.], 直閣一員 [從六品至正三品.], 待教一員 [正九品至正七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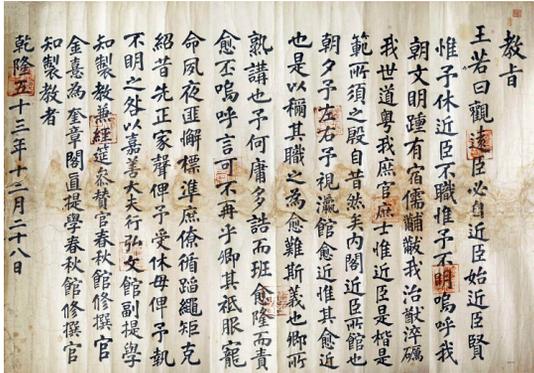
36)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世子侍講院. “... 輔德一員 [正三品.《原》從三品.《增》陞品.], 兼輔德一員 [正三品.《續》增置.], 進善一員 [正四品.《續》增置.], 弼善一員 [正四品.], 兼弼善一員 [正四品.《續》增置.], 文學一員 [正五品.], 兼文學一員 [正五品.《續》增置.], 司書一員 [正六品.], 兼司書一員 [正六品.《續》增置.], 說書一員 [正七品.], 兼說書一員 [正七品.《續》增置.], 諮議一員 [正七品.《續》增置.]”

각신교지를 받았다. 이어서 1789년(정조 13) 2월에 승정원 도승지와 규장각 직제학을 겸직하였지만 각신교지 대신에 고신을 받았다. 이후 김희가 다른 관직과 함께 규장각 직제학을 겸직할 때에도 계속해서 고신이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덕의 경우에도 1890년(고종 27) 11월에 처음 규장각 직각에 임명되었을 때 각신교지를 받았다. 이후 1891년(고종 28) 6월에 형조좌랑과 규장각 직각을 겸직하였지만 각신교지 대신에 고신을 받았다.

〈표 3〉 金憲와 金商惠의 閣臣教旨와 告身 발급 현황

번호	발급시기	수취자	관직명	문서명
1	1788년(정조 12) 12월 28일	金憲	<u>奎章閣直提學</u> · 春秋館修撰官 · 知製教	閣臣教旨
2	1789년(정조 13) 2월 19일	金憲	嘉善大夫 · 行承政院都承旨 · 兼經筵參贊官 · 春秋館修撰官 · 藝文館直提學 · 尙瑞院正 · <u>奎章閣直提學</u> · 知製教	告身
3	1789년(정조 13) 9월 27일	金憲	嘉善大夫 · 行承政院都承旨 · 兼經筵參贊官 · 春秋館修撰官 · 藝文館直提學 · 尙瑞院正 · <u>奎章閣直提學</u> · 知製教	告身
4	1789년(정조 13) 12월 4일	金憲	嘉善大夫 · 吏曹參判 · <u>兼奎章閣直提學</u> · 春秋館修撰官 · 知製教	告身
5	1789년(정조 13) 12월 20일	金憲	嘉善大夫 · 行承政院都承旨 · 兼經筵參贊官 · 春秋館修撰官 · 藝文館直提學 · 尙瑞院正 · <u>奎章閣直提學</u>	告身
6	1890년(고종 27) 11월	金商惠	通訓大夫 · <u>行奎章閣直閣</u> · 兼春秋館編修官 · 校書館校理 · 知製教	閣臣教旨
7	1891년(고종 28) 6월	金商惠	通訓大夫 · 行禮曹佐郎 · <u>兼奎章閣直閣</u> · 春秋館編修官 · 校書館校理 · 知製教	告身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문서 양식은 현전하는 규장각 직제학 김희 각신교지와 세자시강원 필선 김상덕 춘방교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2〉 1788년(정조 12) 奎章閣 直提學 金憲 閣臣教旨와 濬哲之寶

- 01) 教旨
- 02) 王若曰, 觀遠臣, 必自近臣始, 近臣賢,
- 03) 惟子休, 近臣不職, 惟予不明, 嗚呼, 我
- 04) 朝文明, 踵有宿儒, 黼黻我治猷, 淬礪
- 05) 我世道, 粵我庶官庶士, 惟近臣, 是楷是
- 06) 範, 所須之殷, 自昔然矣, 內閣近臣所館也,
- 07) 朝夕予, 左右予, 視瀛館愈近, 惟其愈近
- 08) 也, 是以稱其職之, 爲愈難斯義也, 卿所
- 09) 熟講也, 予何庸多誥, 而班愈隆, 而責
- 10) 愈丕, 嗚呼, 言可不再乎, 卿其祗服寵
- 11) 命, 夙夜匪懈, 標準庶僚, 循蹈繩矩, 克
- 12) 紹昔先正家聲, 俾予受休, 毋俾予執
- 13) 不明之咎, 以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
- 14) 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 15) 金憲, 爲奎章閣直提學·春秋館修撰官·
- 16) 知製教者.
- 17) 乾隆五十三年十二月二十八日.

[濬哲之寶] 9顆

교지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멀리 있는 신하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가까이 있는 신하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으니 가까이 있는 신하의 현명함은 오직 나의 경사인데, 가까이 있는 신하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내가 밝지 못한 까닭이다. 아,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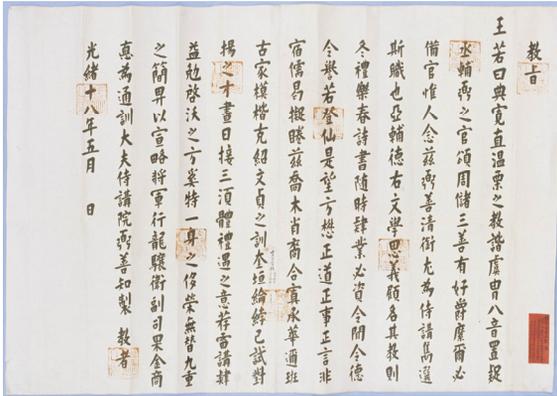
조정은 文明하고 학문과 명망이 높은 선비가 이어져 있으니 나의 다스림을 빛나게 하고 나의 世道를 같고 닦았다. 이에 나의 여러 관원과 선비 중에 오직 가까이 있는 신하는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니 필요한 것이 예로부터 그러하였다. 內閣은 가까이 있는 신하가 머무를 때 아침저녁으로 나를 보좌하니 홍문관과 비교하면 더욱 가깝기 때문에 더욱 가까운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직임에 알맞은 사람은 더욱 이 의리를 행하기 어렵게 된다. 경이 깊이 강구하였는데 내가 어찌 많은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반열이 더욱 높아질수록 책임이 더욱 커졌으니 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은 충애하여 내리는 명을 공경히 받들어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말고 여러 관료의 표준이 되어 법도를 따르며, 옛 先正 집안의 명성을 이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여 내가 밝지 못한 허물을 없게 하라. 가선대부·행홍문관부제학·지제교·경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김희를 규장각직제학·춘추관수찬관·지제교에 임명한다.

건륭 53년(1788, 정조 12) 12월 28일.

〈그림 2〉는 1788년(정조 12) 12월 28일에 정조가 규장각 직제학으로 임명된 김희에게 내린 각신교지이다. 김희는 12월 18일에 이조참판으로 임명되었고, 28일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임명되었다가 같은 날에 규장각 직제학으로 임명되었다.

김희 각신교지는 1행에 국왕의 명령을 뜻하는 ‘教旨’를 기재하였고, 2행부터 ‘王若曰’로 본문을 시작하였다. 2~18행의 본문은 ‘멀리 있는 신하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가까이 있는 신하부터 시작한다.(觀遠臣 必自近臣始)’라는 옛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近臣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오직 근신만이 모범이 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內閣(규장각)은 근신이 머무르는 곳이며 瀛館(홍문관)과 비교하여 더욱 가깝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은 寵命을 받들어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말고 여러 관료의 표준이 되어 법도를 따르라는 당부의 내용으로 끝맺고 있다.

13~16행의 임명 내용은 김희의 이전 관직과 새로 임명된 ‘奎章閣直提學·春秋館修撰官·知製教’를 수록하였다. 17행의 발급일자는 청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고, 청 연호와 본문에는 총 9개의 濬哲之寶를 안보하였다.



<그림 3> 1892년(고종 29) 侍講院 弼善 金商惠 春坊教旨와 濬明之寶

- 01) 教旨
 - 02) 王若曰. 典寬直溫栗之教, 諧虞胄八音, 置疑
 - 03) 丞輔弼之官, 頌周儲三善. 有好爵縻爾, 必
 - 04) 備官惟人念, 茲弼善清銜, 尤為侍講雋選.
 - 05) 斯職也亞輔德右文學, 思義顧名, 其教則
 - 06) 冬禮樂春詩書, 隨時肄業, 必資令聞令德
 - 07) 令譽, 若登仙是望, 方懋正道正事正言, 非
 - 08) 宿儒曷擬. 睠茲喬木肖裔, 合真承華邇班.
 - 09) 古家模楷, 克紹文貞之訓, 奎垣綸綍, 已試對
 - 10) 揚之才. 晝日接三, 須體禮遇之意, 荐雷講肄,
 - 11) 益勉啓沃之方, 奚特一身之侈榮, 無替九重
 - 12) 之簡畀. 以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金商
 - 13) 惠, 為通訓大夫·侍講院弼善·知製 教者.
 - 14) 光緒十八年五月 日.
- [濬明之寶] 9顆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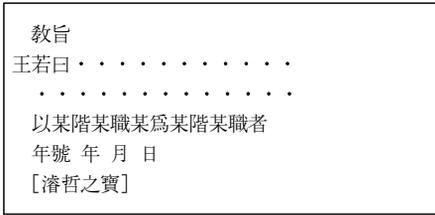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대하면서 강직하고 온화하면서 위엄이 있는 명령을 범으로 삼아서 순임금 때 夔가 8음에 조화를 이루었고, 보필하는 관직을 설치하여 주나라 세자의 三善을 칭송하였다. 좋은 관직에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관직을 마련하고 오직 그 사람을 생각하니 이에 弼善은 清銜이므로 더욱 시강원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관직은 輔德보다 아래에 있고 文學보다 위에 있으면서 義를 생

각하고 이름을 돌아보며, 그 교육은 겨울에 禮와 樂을, 봄에 詩와 書를 가르쳐서 때에 따라 학업을 익히게 하였다. 반드시 좋은 명성과 덕과 명예에 바탕을 두니 신선과 같은 사람을 희망하고, 바야흐로 바른 도와 일과 말을 힘써야 하니 학문과 명망이 높은 선비가 아니면 어찌 추천하겠는가? 돌아보건대 이 명문가의 후손은 세자의 가까운 반열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古家의 모범으로 文貞의 가르침을 능히 이어받았고 규장각의 綸綍로 이미 널리 알리는 재주를 시험하였다. 밤낮으로 세 차례 만나서 모름지기 예우하는 뜻을 받들어야 하고 우리가 거둬야 하는 것처럼 강론하고 익혀서 아뢰어 도움이 되는 방도를 더욱 힘써야 한다. 어찌 다만 일신의 빛나는 영광이겠는가? 구중궁궐에서 선발하여 임명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선략장군·행용양위부사과 김상덕을 통훈대부·시강원필선·지제교에 임명한다.
광서 18년(1892, 고종 29) 5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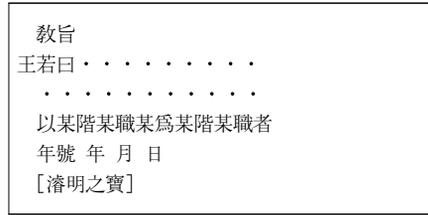
〈그림 3〉은 보령 경주김씨 직각 김상덕 종택의 소장 문서로 1892년(고종 29) 5월에 고종이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임명된 김상덕에게 내린 춘방교지이다. 김상덕은 1890년(고종 27) 11월에 규장각 직각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1892년 5월 3일에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낙점되었다.

김상덕 춘방교지의 1행과 2행은 위에서 살펴본 김희 각신교지와 동일하였다. 2~12행의 본문은 虞冑의 八音과 周儲의 三善을 언급하면서 세자를 보필하는 신하의 필요성으로 시작하였고, 세자시강원 필선은 淸銜이므로 더욱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김상덕에 대해 喬木과 같은 명문 가문의 후손이며 이전에 규장각 각신으로 국왕의 명령을 제출하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세자시강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예우하는 뜻을 받들고 간언하여 보좌하는 방도를 더욱 힘쓰라는 당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12~13행의 임명 내용은 김상덕의 이전 관직과 새로 임명된 '通訓大夫·侍講院 弼善·知製教'를 수록하였다. 14행의 발급일자는 청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고, 청 연호와 본문에는 총 9개의 濬明之寶를 안보하였다.



〈그림 4〉 閣臣教旨의 문서 양식



〈그림 5〉 春坊教旨의 문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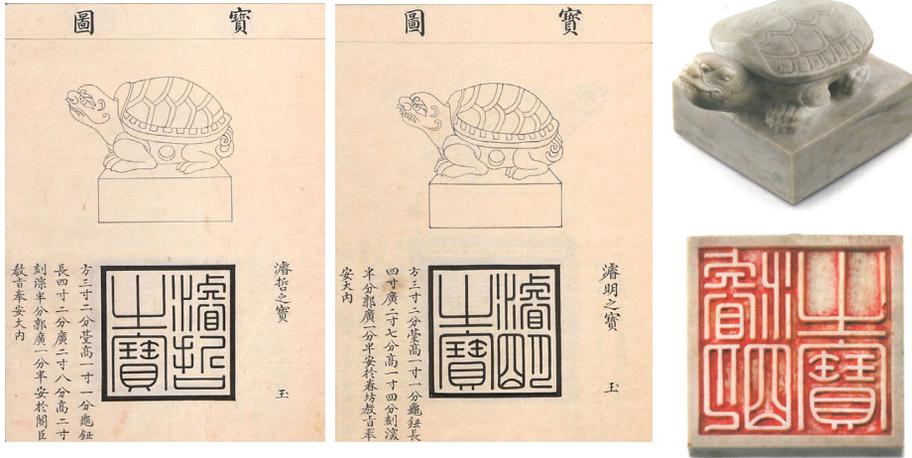
김희 각신교지와 김상덕 춘방교지를 통해 문서 양식을 살펴보면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고신과 교서의 문서 양식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1행은 ‘教旨’를 기재하여 文武官四品以上告身과 동일하였다. 2행의 본문은 교서와 동일하게 ‘王若曰’로 시작하는데, ‘王’字는 본문의 다른 글자보다 높은 위치로 擡頭하여 기재하였다. 본문은 규장각·세자시강원 관직과 업무의 중요성, 해당 관원을 임명한 이유, 국왕이 당부하는 내용 등을 駢麗文으로 제출하여 수록하였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내용을 ‘+품계·관직·성명+爲+품계·관직+者(以某階某職某爲某階某職者)’로 끝맺고 있다. 임명 관직의 기재 방식은 고신과 유사한 문서 양식이지만, 교서의 끝부분에 기재된 ‘故茲教示 想宜知悉’은 기재되지 않았다. 본문의 다음 행에 발급 일자는 淸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여 교서·고신과 동일하였다. 춘방교지의 문서 양식은 『離院條例』에 수록되었는데, 教旨式에서 ‘王若曰 云云 以某爲侍講院某官知製教者’로 기재되었으며, 細註에서 初行에 ‘教旨’ 두 자를 쓰고, 後行에는 연호와 월일을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⁷⁾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발급 일자와 본문에는 새롭게 만든 濬哲之寶와 濬明之寶를 홀수로 안보하였다. ‘濬哲’과 ‘濬明’의 어원은 『書經』 舜典에서 순임금의 덕을 표현한 내용인 ‘濬哲文明(깊고 지혜롭고 문체가 나고 환하게 밝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³⁸⁾ 고종 연간에 寶印과 符信을 정리한 『寶印符信總數』에는 준명지보

37) 『離院條例』官職. “○輔德以下新除時, 皆宣教旨. [教旨, 入直中製進, 繕寫, 入直典書官舉行. ○教旨安濬明之寶, 寶請出時, 典書官詣承政院, 陪來本院, 而還納時同.] 【教旨式】王若曰, 云云. 以某爲侍講院某官知製教者. [初行書教旨二字, 後行書年號月日.]”

와 준철지보의 도판과 印文, 재질, 규격, 사용처, 보관처 등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그림 6〉 『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濬哲之寶와 濬明之寶

〈그림 7〉 濬明之寶³⁹⁾

濬哲之寶. 玉으로 만든다. 일변은 3치 2푼, 臺의 높이는 1치 1푼이다. 龜紐의 길이는 4치 2푼, 너비는 2치 8푼, 높이는 2치이다. 새긴 깊이는 반푼, 테두리의 너비는 1푼 반이다. 閣臣教旨에 안보하고 大內에 봉안한다.⁴⁰⁾

濬明之寶. 玉으로 만든다. 일변은 3치 2푼, 臺의 높이는 1치 1푼이다. 龜紐의 길이는 4치, 너비는 2치 7푼, 높이는 1치 4푼이다. 새긴 깊이는 반푼, 테두리의 너비는 1푼 반이다. 春坊教旨에 안보하고 大內에 봉안한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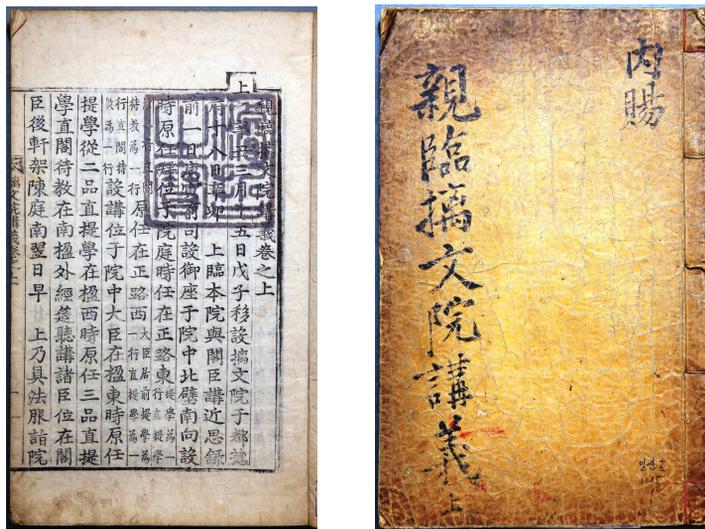
38) 『書經集傳』卷一 虞書 舜典. “曰若稽古帝舜, 曰重華協于帝, 濬哲文明, 溫恭允塞, 玄德升聞, 乃命以位.”

39) 국립고궁박물관, 2017 『다시 찾은 조선 왕실의 어보』, 52-53면.

40) 『寶印符信總數』 濬哲之寶. “玉, 方三寸二分, 臺高一寸一分, 龜紐長四寸二分, 廣二寸八分, 高二寸, 刻深半分, 郭廣一分半, 安於閣臣教旨, 奉安大內.”

41) 『寶印符信總數』 濬明之寶. “玉, 方三寸二分, 臺高一寸一分, 龜紐長四寸, 廣二寸七分, 高一寸四分, 刻深半分, 郭廣一分半, 安於春坊教旨, 奉安大內.”

『보인부신총수』에서 준철지보와 준명지보는 모두 재질은 玉이고 거북 모양의 龜紐이며 小篆으로 인문을 구성하였다. 규격은 대략 동일하나 龜紐의 너비와 높이에서 준철지보가 조금 큰 것을 알 수 있다. 준철지보는 각신교지 이외에 정조가 규장각 摛文院에 친림하여 각신과 『近思錄』을 강독한 내용을 수록한 『親臨摛文院講義』 등을 內賜할 때에 안보하였다.⁴²⁾ 준명지보는 2014년 4월에 미국에서 환수되어 보물 제1618-4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⁴³⁾



〈그림 8〉 濬哲之寶가 安寶된 『親臨摛文院講義』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국왕의 임명문서인 고신과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인 교서의 문서 양식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만든 문서이다. 국왕이 관원에게 교서를 내리는 경우는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 등 지방의 최고 행정관 및 군사 지휘관, 공신으로 녹훈된 관원, 致仕한 관원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각신교지와

42) 국립중앙도서관, 2015 『옛 문서와 책에서 만나본 御寶』, 46-47면.

43) 성인근, 2014 앞의 논문, 193면.

춘방교지의 수취자는 정3품의 당상관도 있지만 당하관이나 정7품 이하의 참하관도 있었다. 규장각과 세자시강원 관원 중에서 품계가 낮은 당하관과 참하관에게 교서를 내려주는 것은 교서의 위상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에 ‘王若曰’은 기재하지만 ‘故茲教示 想宜知悉’은 기재하지 않으며 ‘教旨’와 임명된 관직을 수록하여 교서와 고신의 문서 양식을 절충하였다. 이러한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문서 양식을 통해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관원을 예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발급과 수취

조선 후기에 국왕이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를 발급하고 규장각과 세자시강원 관원이 수취하는 과정은 제도화된 규정과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다. 각신교지의 발급 과정은 규장각 관원을 새롭게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규장각 제학과 직제학의 임명은 이조의 추천과 국왕의 落點을 거쳤다. 제학은 대제학 및 홍문관·예문관 제학에 추천된 사람, 직제학은 홍문관 부제학에 추천된 사람 중에 이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望單子를 올리면 국왕이 낙점하였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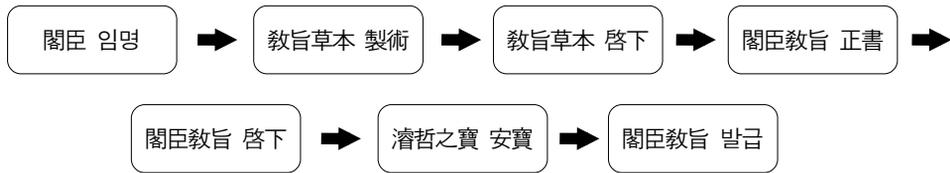
직각과 대교의 임명은 국왕이 圈點의 명령을 내리면 규장각에서 권점하는 과정을 거쳤다. 직각은 홍문관을 거친 사람, 대교는 예문관 검열의 권점에 포함되거나 승정원 주서와 세자시강원 설서에 추천된 사람 중에 규장각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권점하였다. 규장각에서 권점을 완료하면 후보자의 순서를 정한 후에 啓目을 작성하여 入啓하고 국왕에게 결재를 받았다. 규장각에서 세 명의 후보자를 마련한 후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고 政事를 거쳐 국왕의 낙점을 받아 임명하였다.⁴⁵⁾ 그런

44) 『奎章閣志』 差除. “內閣提學二員, [從二品至從一品.] 以文衡及弘文·藝文提學通望人, 直提學二員, [堂上正三品至從二品.] 以弘文館副提學通望人, 自吏曹長望受點.”

45) 『奎章閣志』 差除. “直閣一員, [堂下從六品至正三品.] 以曾經玉署人, 待教一員, [參外正九

데 권점을 통해 직각과 대교를 임명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교체할 경우에는 이전에 권점 결과를 기재한 前望單子에 낙점하여 임명하였다.

규장각 각신이 새롭게 임명되면 각신교지의 제출은 宋 龍圖閣의 故事에 따라 규장각 관원이 담당하였다.⁴⁶⁾ 규장각 관원은 각신교지를 제출한 후에 教旨草本(教旨初本 또는 教旨單子)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入啓하고 결재를 받았다. 국왕의 결재를 받으면 각신교지를 正書하고 다시 국왕에게 결재를 받았다.⁴⁷⁾ 규장각에서는 각신교지에 어보를 안보하기 위해 濬哲之寶를 내줄 것을 청하는 草記를 작성하였고, 승정원에서는 규장각의 초기를 국왕에게 입계하였다. 국왕이 준철지보를 승정원에 내리면, 승정원에서 규장각에 전달하고 규장각에서 각신교지에 준철지보를 안보한 후에 승정원에서 준철지보를 다시 넣었다.⁴⁸⁾



〈그림 9〉 閣臣教旨 발급 과정

각신교지의 수취 과정은 규장각 각신이 국왕에게 謝恩肅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品至正七品.] 以翰圈·注薦·說書通望人, 自本閣書薦記, 圈點. ... 以圈之多少, 爲望之次第, 修啓目, 啓下, 移文吏曹, 待開政備望.”; 『銀臺便攷』禮房攷 內閣 [閣圈附]. “○ 閣圈爲之 事命下, 則自內閣, 時任閣臣, 以牙牌牌招, 會圈完點後, 啓目來呈, 則依例書付傳教軸入啓, 啓下, 則自吏批擬望受點後, 自本閣牙牌請牌, 而肅謝時, 教書等節, 竝自本閣舉行. [閣圈命 下, 則本院請政官, 牌招開政.]”

46) 『奎章閣志』宣教. “凡閣臣除拜, 依宋朝龍圖閣故事, 自閣中撰麻.”

47) 『內閣日曆』 정조 19년(1795) 4월 2일(임오). “教旨草本, 先爲入之, 待啓下, 正書後, 更爲 入之, 待啓下, 安寶事, 定式.”; 순조 33년(1833) 4월 18일(무오). “教旨單子, 自差備入啓, 啓下.”; 헌종 6년(1840) 10월 26일(임오). “教旨初本, 自差備, 先爲啓下.”

48) 『銀臺便攷』禮房攷 內閣. “奎章閣草記, 直閣·待教教旨安寶次, 濬哲之寶請出. [教旨, 自內 閣書入, 寶則下本院, 而知委內閣, 自內閣安寶後, 還入則本院舉行, 提學·直提學同.]”

어졌다. 규장각 제학 이하의 관원이 숙배할 때에는 송 용도각 學士가 편전에서 謝箋을 올리는 규례에 따라 합문 밖에서 숙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檢書官이 각신 교지를 전해 주었다.⁴⁹⁾

각신교지의 발급과 수취 과정은 1823년(순조 23) 규장각 대교에 임명된 李憲璋와 金正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월 11일에 규장각에서는 대교의 권점을 시행하여 이현위와 김정희가 4점을 받았다.⁵⁰⁾ 당일에 규장각에서는 권점의 결과를 수록한 圈點單子와 각신을 추천하는 薦狀啓目을 순조에게 入啓하였다.⁵¹⁾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3월 11일(경진).

薦狀. 규장각 검교제학 신 金祖淳 등이 薦狀에 대한 내용으로 삼가 아뢰입니다. 규장각 대교의 후임자를 아직 임명하지 않아서 오늘 모여서 圈點하니 예문관 검열 李憲璋와 金正喜 등 2인을 뽑아서 규례에 따라 薦望을 갖추어 이조에 보내고 연유를 삼가 갖추어 啓聞합니다.⁵²⁾

규장각에서 순조에게 올린 천장계목은 규장각 대교를 임명하기 위해 예문관 검열 이현위와 김정희를 권점하고 薦望을 작성하여 이조에 보낸다는 내용이었다.⁵³⁾ 최종적으로 규장각 대교에 이현위가 낙점되었고 吏批를 통해 임명되었다.⁵⁴⁾ 규장

49) 『奎章閣志』에는 吏曹郎官이 教旨를 주고, 檢書官이 教書를 전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여기에서 教旨는 다시 閣臣에 임명되거나 검직한 각신에게 내리는 告身이고, 教書는 처음 각신으로 임명된 관원에게 내리는 閣臣教旨로 볼 수 있다. (『奎章閣志』 宣敎 [附肅拜]. “本閣提學以下肅拜, 依宋閣學士進謝箋便殿之例, 肅拜於閣門外, 吏曹郎授教旨, 檢書官傳教書.”)

50)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3월 11일(경진). “直閣會圈四點, 朴永元·趙寅永·李若愚以上取三人, 待教會圈四點, 李憲璋·金正喜, 以上取二人, 圈點座目, 檢校提學金祖淳, 檢校直提學李存秀, 直提學李龍秀, 檢校直閣鄭基善, 檢校待教李鶴秀.”

51)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3월 11일(경진). “圈點單子及薦狀啓目入啓.”

52)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3월 11일(경진). “薦狀. … 奎章閣檢校提學臣金祖淳等, 謹啓爲薦狀事, 本閣待教未差代, 今日會圈, 取藝文館檢閱李憲璋·金正喜等二人, 依例備薦望, 送于吏曹, 緣由謹具啓聞.”

53) 薦狀啓目은 『(再草本)奎章閣志』 啓日式에 따라 발급되었다. (『(再草本)奎章閣志』 草記. [啓辭·啓目·狀啓] “啓日, 以帖子書. 奎章閣謹啓爲某事. 云云. 結之曰, 謹具啓聞. 如殿最·考功·推考及書吏差出, 皆以啓目爲之. [以上啓目.]”)

각에서는 대교 이현위의 각신교지를 입게하여 결재를 받았고,⁵⁵⁾ 각신교지에 어보를 안보하기 위해 준철지보를 요청하는 草記를 올렸다.⁵⁶⁾ 규장각에서 이현위를 牌招하였고, 이현위는 입궐하여 순조에게 사은숙배한 후에 각신교지를 수취하였다.⁵⁷⁾ 이후 이현위는 1823년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규장각 대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8월 5일에 순조는 병에 걸린 이현위의 체직을 허락하였다. 자신의 권점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조는 규장각 대교를 임명하기 위해 前望單子를 들일 것을 명하였다. 순조는 전망단자에서 김정희를 낙점하여 규장각 대교에 임명하였다.⁵⁸⁾ 규장각에서는 김정희를 패초하고 준철지보를 요청하는 초기를 이현위의 사례와 동일하게 입게하였다.⁵⁹⁾ 김정희는 순조에게 사은숙배한 후에 각신교지를 수취하였다.⁶⁰⁾ 규장각 대교 김정희가 수취한 각신교지는 다음과 같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
- 54)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3월 11일(경진). “直提學洪奭周, 直閣朴永元, 待教李憲璋, 落點.” ; 『承政院日記』 2164책, 순조 23년(1823) 3월 11일(경진). “有政. 吏批, … 李憲璋爲待教.”
- 55)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3월 11일(경진). “直閣·待教教旨, 先爲啓下. … 李憲璋教旨. 若曰, 我寧考肇建內閣, 運啓文明, 予小子叨承丕基, 念軫繼述, … 牙牌催導於紫甌, 人方拭目, 華誥誕宣於青瑣, 予實簡心, 竝啓下.”
- 56) 『承政院日記』 2164책, 순조 23년(1823) 3월 11일(경진). “徐春輔, 以奎章閣言啓曰, 新除授直閣朴永元, 待教李憲璋教旨安寶次, 濬哲之寶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 57)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3월 11일(경진). “直閣朴永元, 待教李憲璋, 承牌謝恩.”
- 58)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8월 5일(신사). “上曰, 有實病待教許遞, 前望單子入之. … 待教前望單子入之, 金正喜落點.” ; 『承政院日記』 2169책, 순조 23년(1823) 8월 5일(신축). “有政. 吏批, … 奎章閣待教金正喜, 弘文正字單金正喜, 校書正字單金正喜, … 再政. 兼奎章閣待教單金正喜.”
- 59)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8월 5일(신사). “本閣啓曰, 新除授待教金正喜, 以實錄曝曬事, 雖已下直, 尙未發行云.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 本閣啓曰, 新除授待教金正喜教旨安寶次, 濬哲之寶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 60) 『內閣日曆』 순조 23년(1823) 8월 5일(신사). “金正喜承牌謝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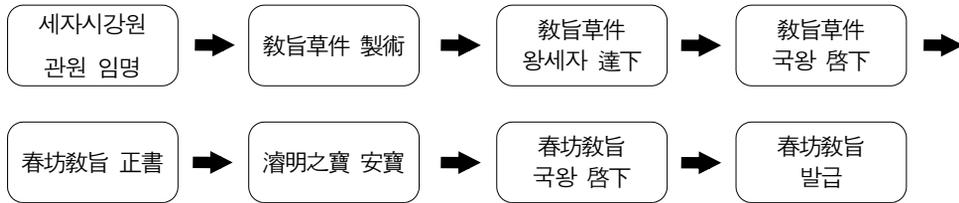


〈그림 10〉 1823년(순조 23) 奎章閣 待教 金正喜 閣臣教旨

춘방교지의 발급 과정은 각신교지와 마찬가지로 세자시강원 관원의 임명이 먼저 시행되었다. 그러나 세자시강원 관원의 임명은 규장각과 다르게 별도의 권점을 시행하지 않고 국왕이 전망단자에 낙점하여 임명하였다.

세자시강원 보덕 이하의 관원이 새롭게 임명되면 춘방교지의 製進은 세자시강원에 入直한 관원이 담당하였다. 입직 관원이 춘방교지를 제출하면 教旨草件을 먼저 왕세자에게 入達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국왕에게 入啓하여 결재를 받았다. 세자시강원에서는 준명지보를 청하는 내용으로 국왕에게 草記를 올리기 전에 미리 왕세자에게 아뢰어 결재를 받았다. 입직한 典書官은 춘방교지의 繕寫를 담당하였고, 아울러 승정원에 가서 준명지보를 가지고 오는 것과 다시 납부하는 것도 담당하였다.⁶¹⁾ 춘방교지를 정서하고 안보한 후에 국왕에게 결재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춘방교지가 발급되었다.

61) 『离院條例』官職. “輔德以下新除時, 皆宣教旨. [教旨入直中製進, 繕寫入直典書官舉行. ○教旨安濟明之寶請出時, 典書官詣承政院, 陪來本院, 而還納時同.]”



〈그림 11〉 春坊教旨 발급 과정

춘방교지의 수취 과정은 세자시강원 관원이 국왕에게 사은숙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관원은 먼저 각 殿과 宮에 사은숙배하였다. 이어서 세자시강원에서 세자궁에 肅拜單子를 入達하고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숙배단자를 入啓하였다.⁶²⁾ 세자시강원 관원이 사은숙배할 때에는 引儀가 臚唱하고 우선 네 번 절을 한 후에 典書官이 춘방교지를 선포하고 꿇어앉아서 전하였다. 이조낭청이 춘방교지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전하면 세자시강원 관원도 꿇어앉아서 춘방교지를 받고 이후에 네 번 절을 하였다. 국왕의 장막 앞에서 세자시강원 관원이 사은숙배할 때에는 춘방교지를 서서 전하면 해당 관원은 꿇어앉아서 받았다.⁶³⁾

춘방교지의 발급과 수취 과정은 1890년(고종 27) 세자시강원 兼司書에 임명된 兪鎭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월 11일에 고종은 검사서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전망단자를 들일 것을 우승지 민중식에게 명하였다. 11월 13일에 고종은 전망단자에서 유진필을 낙점하여 검사서에 임명하였다.⁶⁴⁾

세자시강원에서는 유진필 춘방교지의 草件을 제출한 후에 教旨草件을 왕세자에게 입달하여 결재를 받았고, 이어서 고종에게 입계하여 결재를 받았다.⁶⁵⁾ 준명지

62) 『离院條例』 肅拜. “除職後, 謝恩於各殿宮, 而加階與兼職, 下直及入來, 只大殿當宮, [凡殿座與動輿時, 則以侍衛服色肅拜.] 肅拜單子 [各殿肅拜單子修送, 承政院入啓, 世子宮本院入達, 世孫宮同.] 啓達.”

63) 『离院條例』 肅拜. “肅拜時, 引儀臚唱, 先四拜, 典書官奉宣教跪傳, 吏郎奉教旨跪傳, [竝跪受.] 有後四拜. [帳前肅拜時, 立傳跪受.]”

64) 『承政院日記』 3003책, 고종 27년(1890) 11월 11일(정축). “傳于閔宗植曰, 兼司書有關之代, 前望單子入之.” ; 『承政院日記』 3003책, 고종 27년(1890) 11월 13일(기묘). “兼司書前望單子入之, 兪鎭弼落點.”

65) 『東宮日錄』 17책, 경인(1890, 고종 27) 11월 13일(기묘). “本院, 以兼司書兪鎭弼教旨草件入達. [先達後啓也.]”

보를 요청할 때에는 세자시강원에서 고종에게 입계하는 내용에 대해 왕세자에게 결재를 받고, 이어서 승정원을 통해 고종에게 草記를 올려 결재를 받았다.⁶⁶⁾ 춘방 교지를 정서하고 준명지보를 안보한 후에 고종에게 결재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유진필 춘방교지가 발급되었다.⁶⁷⁾

세자시강원에서 유진필을 부르기 위해 牙牌를 요청할 때에도 준명지보를 요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왕세자에게 먼저 결재를 받은 후에 고종에게 결재를 받았다.⁶⁸⁾ 유진필은 세자시강원 아패를 받고 입궐하여 고종에게 사은숙배를 한 후에 춘방교지를 수취하였다.⁶⁹⁾ 세자시강원 검사서 유진필이 수취한 춘방교지는 다음과 같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림 12〉 1890년(고종 27)世子侍講院 弼善 俞鎮弼 春坊教旨

- 66) 『春坊日記』 경인(1890, 고종 27) 11월 13일(기묘). “本院達曰, 新除授兼司書俞鎮弼教旨安寶次, 濬明之寶請出事, 入啓之意, 敢達. 答曰, 知道”; 『承政院日記』 3003책 고종 27년(1890) 11월 13일(기묘). “又以侍講院言啓曰, 新除授兼司書俞鎮弼, 教旨安寶次, 濬明之寶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 67) 『春坊日記』 경인(1890, 고종 27) 11월 13일(기묘). “兼司書俞鎮弼教旨正書入啓下.”
- 68) 『春坊日記』 경인(1890, 고종 27) 11월 13일(기묘). “本院達曰, 新除授兼司書俞鎮弼, 卽爲牌招察任, 何如. [先達後啓.] 傳曰, 允. 兼司書牌招次, 牙牌請出之意, 微稟.”; 『承政院日記』 3003책 고종 27년(1890) 11월 13일(기묘). “又以侍講院言啓曰, 新除授兼司書俞鎮弼, 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 69) 『春坊日記』 경인(1890, 고종 27) 11월 13일(기묘). “兼司書俞鎮弼承牌招入來, 兼司書俞鎮弼肅拜.”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발급 과정은 교서의 발급 과정과 비교해서 볼 수 있다. 教旨草本과 教旨草件은 현전하지 않지만 교서를 발급할 때에 국왕에게 결재를 받는 製進單子와 비슷한 용도의 문서로 추측할 수 있다.⁷⁰⁾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본문은 교서와 마찬가지로 駢儷文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국왕이 검토하고 결재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에 안보하는 준철지보와 준명지보를 국왕에게 요청할 때에도 교서의 시명지보와 마찬가지로 승정원을 통해 草記를 올려 요청하였다. 반면에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를 正書한 후에 국왕의 결재를 받는 것은 교서의 발급 과정보다 결재 과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춘방교지의 경우에는 왕세자의 결재가 추가되어 教旨草件을 왕세자에게 먼저 결재를 받은 후에 국왕의 결재를 받았다. 이를 통해 세자시강원 관원에 대한 왕세자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5. 맺음말

조선 후기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정조와 고종 연간에 시행된 규장각과 세자시강원 관원의 임명문서이다. 정조는 규장각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宋龍圖閣의 제도를 참고하여 각신교지를 시행하였다. 이후 고종은 세자시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조가 시행한 각신교지를 참고하여 춘방교지를 시행하였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고신과 유사한 임명문서지만 현전하는 문서는 매우 적었다. 문서 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짧고 수취하는 관원도 제한적이며 규장각과 세

70) 製進單子是 교서제술관이 제출한 교서의 내용에 대해 국왕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승정원의 승지가 제진단자를 入啓하여 국왕의 결재를 받으면, 啓字印을 踏印하고 判付를 기재하였다. (노인환, 2013 『조선후기 教書의 발급 과정 연구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教書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6-144면.)

자시강원에 처음 임명될 때에만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문서 양식은 국왕의 임명문서인 고신과 명령문서인 교서를 혼합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문서의 1행은 ‘教旨’를 기재하고 2행은 ‘王若曰’로 시작하였다. 본문은 규장각·세자시강원 관직과 업무의 중요성, 해당 관원을 임명한 이유, 국왕이 당부하는 내용 등을 駢麗文으로 제출하여 수록하였다. 본문의 끝부분은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관직을 ‘以某階某職某爲某階某職者’로 끝맺고 있다. 본문의 다음 행에는 淸의 연호와 월일로 발급일자를 기재하였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에 안보된 어보는 濬哲之寶와 濬明之寶를 새롭게 제작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발급 과정은 교서의 발급 과정과 유사하여 製述과 正書·安寶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왕의 결재를 2차례 받았다. 춘방교지의 경우에는 제출된 教旨草件을 왕세자가 먼저 결재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왕세자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수취 과정은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관원이 국왕에게 謝恩肅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국왕이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원을 우대하기 위해 시행된 문서 제도로 볼 수 있다.

본고는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시행 과정, 문서 양식, 발급 및 수취 과정 등 문서 제도사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고문서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수취자를 분석하여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관원의 당색과 학파 등의 정치적인 측면도 연구할 수 있다. 또한 정조 연간에 규장각의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지만, 고종 연간에 세자시강원의 위상 강화에 대한 연구도 춘방교지와 관련시켜 연구할 수 있다. 특히 고종이 세자시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규장각의 제도를 많이 반영한 측면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현전하는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별도의 문서로 분류하기 보다는 대부분 고신이나 교서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본고를 계기로 각신교지와 춘방교지가 많이 발굴되고 개별적인 문서명으로 분류되어 이를 통해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21. 5. 9),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9)

참고문헌

- 『內閣日曆』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main.do>)
- 『東宮日錄』 (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
- 『文獻通考』 (中國基本古籍庫)
- 『書經集傳』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 『離院條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所藏, K2-2035)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 『春坊日記』 (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
- 국립고궁박물관, 2017 『다시 찾은 조선 왕실의 어보』.
- 국립중앙도서관, 2015 『옛 문서와 책에서 만나본 御寶』.
- 김건우, 2008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 _____, 2012 『규장각의 문서제도와 그 위상』, 『嶺南學』 21, 영남문화연구원.
- 노인환, 2013 『조선후기 敎書의 발급 과정 연구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 敎書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_____, 2014 『朝鮮時代 敎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보미, 2017 『正祖의 御製統治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寶印符信總數』.
- _____, 1999 『大典會通』 上·下.
- _____, 1999 『六典條例』 上·下.
- _____, 2000 『銀臺便攷』 上·下.
- _____, 2002 『奎章閣志』.
- _____, 2003 『侍講院志』 上·下.
-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6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 성인근, 2014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문화재』 66, 국립문화재연구소.
- 천안박물관, 2012 『高靈朴氏 進士公派 寄贈遺物』 I.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古文書集成』 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Abstract

The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 of Gakshin Gyoji (閣臣教旨) and Chunbang Gyoji (春坊教旨) in the late Joseon Dynasty

Noh, Inhwan *

Gakshin gyoji and Chunbang gyoji are the documents of appointment of Gyujanggak and Crown Prince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were implemented during the period of King Jeongjo and King Gojong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Gyujanggak, King Jeongjo implemented the Gaksin Gyoji in consideration of Song (宋)'s institution. After that, King Gojong implemented the Chunbang Gyoji in consideration of each Gakushin Gyoji implemented by King Jeongjo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Crown Prince Educational Institution.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Gakushin Gyoji and Chunbang Gyoji were short and there's limited number of officers who received them. Also, they were issued when the Gyujanggak and Crown Prince Educational Institution were first appointed, so there were very few existing documents. The document format reflected both the Goshin(告身), document of appointment, and Gyoseo(教書), document of instruction. In the first line of the document, the word 'Gyoji (教旨)' was written, and in the next line, it began with '王若曰'. The body includes the importance of Gyujanggak and Crown Prince Educational Institution officials and duties, the reason for their appointment, and the contents requested by the king by writing in Byunryomun (駢麗文). At the end of the text, the officials that appointed for Gyujanggak and Crown Prince Educational Institution ended with '以某階某職某爲某階某職者'. In the next line of the body, the date of issuance was written with the era name and the date of 淸. Gakshin Gyoji stamped on the Juncheol Jibo, and the

* Researcher, Jangseogak Archiv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hunbanggyoji on the Junmyeong Jibo respectively. The issuance process was writing (製述), modification (正書), and stamping (安寶), and during that time, the king's approval was received twice. In the case of Chunbang Gyoji, the process in which the crown prince approves the draft Gyoji in advance was added. The receiving process was carried out during in the process of bowing to the king by officers appointed to Gyujanggak and Crown Prince Educational Institution. These Gakshin Gyoji and Chunbang Gyoji can be seen as a document system implemented by the king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Gyujanggak and Crown Princ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o extend a favor to officials.

Key words : Gakshin Gyoji (閣臣教旨), Chunbang Gyoji (春坊教旨), Gyujanggak (奎章閣), Crown Prince Educational Institution (世子侍講院), Gakshin (閣臣), Chunbang (春坊), Junchul Jibo (潛哲之寶), Junmyung Jibo (潛明之寶)